세법학 1부 답안작성요령

서 설

최근 세법학 1부의 주된 출제경향은 단순히 조문을 암기하여 서술하는 이론형 문제 뿐만 아니라 판례를 위주로 한 사례형 문제, 이해 및 세무회계 요소를 바탕으로 한 계산형 문제 그리고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견해형 문제 등 다양한 유형들이 출제되고 있다. 더욱이 과거 국세기본법,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각각 1문제씩 출제하던 경향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증여세와 소득세 등 개별세법을 혼합한 문제도 출제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조문에 대해 알고 있느냐 여부를 뛰어넘어 조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법적 마인드를 어느 정도 형성하였고, 그것을 실제 사례에 접목시킬 수 있는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함이다.

매년 출제경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출제경향을 몇 가지 유형으로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이하에서는 최근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사례형 문제·계산형 문제·이론형 문제 그리고 견해형 문제에 대한 답안작성에 대해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함이니 이 점 상기하기 바란다.

Ⅰ 사례형 문제

사례형 문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출제되기 시작해 그 출제비중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따라서 세법학 1부에서 사례형에 대한 답안접근과 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사례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법을 단순히 암기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해위주로 공부하고 많은 사례형 문제를 접해 봄으로써 응용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1. 사례형 문제의 기본답안작성요령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① p이면 q이다($p \rightarrow q$).

② a는 p에 속한다($a \in p$).

③ 따라서 a는 q이다($a \rightarrow q$).

법이란 p라는 법률요건이 있으면 q라는 법률효과가 생김을 정하는 것이다(①). a라는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이 p라는 요건에 해당한다면(②), a라는 사실에 대하여 q라는 법률효과를 준다(③). 다시 말해서 어떤 법률요건을 해석하고 어떤 사실을 확정하여 그 사실이 그 법률요건을 만족시킨다면 법에 정한 대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이를 조세법에 적용하면,
① '조세법에서는 X라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Y라는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해당 사건에 있어 X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③ 그렇다면 Y라는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위에서
①은 법률의 해석문제에 해당하고,
②는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문제에 해당하고
③은 판단의 문제에 해당한다.

즉, 사례형 문제는 우선 법적근거를 서술하고 사례에서의 사실존재를 인식한 후 과세여부 등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사례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제를 잘 읽어보고 짧은 시간 안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이 문제가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연습지나 문제지에 간단히 개요를 짠 후 차분히 답안을 서술하면 되는 것이다.

(1) 문제제기(서설, 개요, 쟁점 등)

사실 이 부분은 문제파악이라고 보면 된다. 문제의 논거를 잘 보고 어떤 사항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지 파악하여 이하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쓰면 된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쟁점을 파악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그 쟁점에 대하여 이하에서 논하고자 한다는 식으로 서술하면 된다. 즉, 내가 이 문제를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다. 다만, 준비된 논제가 아니라면 문제를 간략히 요약하고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법적 근거의 제목과 물음을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

(예 1) Ⅰ. 문제제기

(1) 대표이사 甲과 甲의 남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
(2) 이하에서는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살펴보고, 甲과 甲의 남편이 협의이혼 되었을 시 남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이하에서는 논하고자 한다.

(예 1)에서 보듯이 문제제기에서는 단순히 문제를 요약정리(분석)하고 사례와 관련된 법적근거를 명시한 후 물음을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시작부분에서 막히면서 세법학 1부 답안작성을 어려워하는데 아무 부담 없이 문제를 요약정리해도 된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부담 없이 문제제기를 작성해라.

(예 2) Ⅰ. 문제제기

(1) 주어진 사례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손익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본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살펴본 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익금성을 논하고자 한다.

(예 2)의 경우 문제제기에서 사례의 쟁점이 되는 키워드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즉, '손익거래인지 아니면 자본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하에서 논하고자 한다'라는 표현을 언급함으로써 출제교수님에게 자신이 주어진 사례의 쟁점을 명확히 알고 있으며, 이를 이하에서 논하고자 한다는 식으로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사례의 쟁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문제를 요약하고 단순히 물음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핵심 쟁점을 문제제기에서 서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례형 문제의 답안작성이 될 것이다.

(2) 법적근거 및 판례의 태도

위에서 언급한 조세법에 있는 'X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Y라는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규정을 서술하면 된다. 이 부분에서 많은 실수를 하는데, 사례형 문제인 만큼 법적근거는 사례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해야 된다. 본인은 답안을 잘 작성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의 대부분은 바로 이런 논점 이탈이다.

예를 들어 상속세의 상속추정에 대한 사례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법적근거에 상속세의 정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이런 내용을 썼다면 미안하지만 점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고 다만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또한 사례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로서 문제지에 위 사례와 관련된 국세부과의 원칙을 서술하고 과세여부의 타당성을 논하라고 했다고 치자, 분명 문제지에는 국세부과의 원칙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사례와 관련된 국세부과의 원칙을 논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세여부의 타당성을 논하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혹자는 국세부과의 원칙의 모든 사항을 열거하고 오히려 신의성실의 원칙보다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더 자세히 서술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적근거를 쓸 때에는 사례에서 물어보는 바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논점이탈을 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최근 시험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판례의 태도를 서술하는 것은 좋은 답안이라고 볼 수 있다.

(3) 사례의 적용

이것은 3단 논법에서 판단의 문제이다. 또한 출제자가 물어보고자 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 부분은

위 (2)에서의 법적근거 또는 판례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면 된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복문이나 중문의 형식이 아닌 단문의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본인의 견해를 명확히 표출할 수 있다.

2. 사례형문제의 유형과 그 유형에 따른 답안작성요령

(1) 단독 사례형 문제

단독 사례형 문제는 문제 내에서 별도의 독립된 문항으로 이론형 문제가 출제되지 아니하고 사례형 문제만 출제되는 유형이다. 이런 단독 사례형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그 답안 작성시 별도로 법적근거가 서술되어야 하는 유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법적근거를 서술할 필요 없이 물어본 바에 대해서만 답을 하면 되는 유형이 있다.

1) 20점 ~ 30점 사이의 단독 사례형 문제

단독 사례형문제의 대표적인 예는 2003년에 기출된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를 들 수 있다.

(예 1)

甲은 乙로부터 A식당을 3억원(권리금 및 시설비를 포함)에 양수하여 상호를 B식당으로 바꾸어 영업하고 있었으나, 사업을 양수한 후 甲도 영업이 부진하여 丙에게 동 식당을 2억5천만원(권리금 및 시설비를 포함)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는 모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이었으며, 甲은 A식당의 영업과 관련하여 양도·양수일 이전에 확정된 乙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3천만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 乙의 체납액에 대하여 丙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지 논하시오(2003년 기출, 20점).

(예 2)

甲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자 비상장 A법인의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였다. 관할세무서는 위 주식을 공매하였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특성상 여러 차례 유찰된 끝에 위 주식은 1주당 20,000원에 甲의 동생인 乙에게 낙찰되었다. 이 낙찰가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또는 감정가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이다.
위 乙의 주식취득일로부터 1개월 후에 甲의 또 다른 동생 丙은 자신이 보유하던 A법인 주식을 아들 丁에게 증여하였다. 丁은 그 증여받은 주식의 주당 시가를 乙이 낙찰받은 주식의 주당 낙찰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이 경우 乙이 공매로 낙찰 받은 위 주식의 1주당 낙찰가격을 시가로 보아 丁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은 타당한지 논하시오(2003년 기출, 20점).

(예 2)를 가지고 모범답안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Ⅰ. 문제제기
(1) 상속세액에 대하여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낮은 가액으로 공매를 받고 그 공매가액으로 해당 주식과 동일 종목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이러한 공매가액을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가 주어진 사례의 쟁점이다.
(2) 이하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사례에서의 낙찰가격을 시가로 봄이 타당한 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사례와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의 평가방법
1. 시가평가의 원칙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한다.
2. 시가의 범위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고,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시가로 인정되는 것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2) 해당 재산(주식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주식은 제외)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①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함)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3억원
③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4.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1)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2)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Ⅲ. 사례에서의 낙찰가격을 시가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
1. 사례판단
(1)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된다.
(2) 다만, 공매가액 중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공매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된다.
(3) 사례의 경우 물납재산을 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인 乙이 공매받은 경우이므로 그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결어
따라서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은 타당하지 않다.
(필자 주) 사실 이 문제는 2003년도 출제될 때에는 법의 미비로 시가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과 2006년에 걸쳐 법이 개정되었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르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의 사례처럼 이런 단독 사례형 문제는 20점 이상으로 출제되면서 사례만 주어지고 법적서술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논술의 범위를 어디까지 서술해야 되는지 파악하는 점, 즉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출제자는 그 물음에 물어보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명시하므로 물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약 위 사례에서 법적근거에 물납의 의의, 절차 등을 언급했다면 논점이탈을 한 것이다. 또한 사례 적용 부분에서 명확히 결론을 다시 결어라는 표현 등을 통해 언급함으로써 출제자에게 자신의 견해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다.

2) 10점 정도의 단독 사례형문제

두 번째 유형은 답안 작성시 별도로 분리하여 법적근거를 서술할 필요 없이 출제자가 물어본 바에 대해서만 논하면 되는 유형이다.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10점 내외로 구성되는 사례형문제에서 출제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유형은 2011년 소득세 문제이다.

(예)

<사례 1> 거주자인 甲은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나의 사업을 구상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였다. 甲은 초등학교 동창이며 자금이 충분한 거주자인 乙에게 출자를 제의하여 동의받은 후, 2010년 3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 실제 사업은 甲이 혼자 수행하고 을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乙은 법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甲과 乙은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물음 1) <사례 1>에서 甲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여 2011년 3월 乙에게 분배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한 경우 乙에게 과세함에 있어서 (1) 소득의 종류, (2) 원천징수, (3) 종합과세여부 및 (4) 총수입금액의 계산상 고려사항 등의 논점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10점).

(물음 1)
1. 소득의 종류
(1)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2)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을에게 분배된 35,000,000원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2. 원천징수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종합과세여부
(1)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또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경우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총수입금액의 계산상 고려사항 등
(1) 소득의 귀속시기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금액의 귀속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한다. 따라서 매년 12월 3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다음연도 5월 31일에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출자공동사업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3) Gross-up 적용여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이 아니다.
(4) 세액계산특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액계산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으로 보아 산출세액을 적용하며, 비교산출세액 계산시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법적근거와 사례가 개별문항으로 분리된 문제

법적근거와 사례가 개별문항으로 분리되는 문제는 2가지 유형이 있다. 이런 유형은 국세기본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다.

1) 첫 번째 유형

2002년 국세기본법문제처럼 (물음 1)에서는 사례와 관련된 법적근거를 물어보고 (물음 2)에서는 위 (물음 1)의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서술할 수 있는 사례형 문제, 즉 쉽게 말하면 단독사례형 문제의 답안작성요령 중 법적근거와 사례적용 자체를 분리시켜 단독 물음으로 구성되는 유형이 있다.

(예 1)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002년 기출, 국세기본법 : 20점).

甲은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여 평소에 거래하던 A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찾아가서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대출상담자는 甲의 소유인 B지역 소재 토지와 건물(감정가액 12억)을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甲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2002년 2월 1일자로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A은행으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았다. 甲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미 부과된 15억원의 소득세(신고일 : 2002년 5월 30일)의 납부를 미루고 있었다. 그 동안 관할세무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납부 독촉을 받아 오다가 드디어 위 B지역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어 관할세무서에 의하여 10억원에 매각되었고, 이에 소요된 체납처분비는 5천만원이었다. 단, 이 토지와 건물은 甲이 70세 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이미 부과된 증여세 6천만원이 미납된 상태이다.

(물음 1) 국세채권과 다른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의 우선변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물음 2) 위 사례에서,

(1) 변제우선순위를 결정하시오.

(2) 관할세무서는 국세채권(소득세) 15억원 중에서 얼마를 변제받을 수 있는가? 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말 것

(물음 1)
Ⅰ. 서설
(1)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이 납세자의 재산에서 경합하는 경우, 국세 등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데, 이를 국세의 우선권이라 한다.
(2) 이하에서는 국세채권과 다른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의 우선변제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Ⅱ. 국세 우선권의 제한
1. 선집행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2. 공익비용의 우선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3.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우선
1)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2) 국세 등의 법정기일 전에 양도담보 및 가등기담보와 관련된 채권은 국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3) 다만, 담보물인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에 불문하고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된다.
4) 법정기일의 의미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날을 말한다.
①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국세 중 신고한 세액 : 그 신고일
② 과세표준·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
4.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우선
주택임차대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국세 및 가산금에 우선한다.
5. 임금채권 우선
① 최종 3월분 임금 등은 공익비용을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② 기타 임금채권은 피담보채권을 제외하고 국세·공과금 등에 우선한다.

(물음 2)
Ⅰ. 변제우선순위
토지 및 건물의 매각대금 10억원 중
1순위 - 체납처분비 5천만원
2순위 - 증여세 6천만원
3순위 - 저당권 7억원
4순위 - 소득세
Ⅱ. 관할세무서장는 국세채권(소득세) 15억원 중 1억 9천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

(예 2)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30점).

비영리내국법인인 甲법인은 해외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으로서 본래의 고유목적사업 외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1. 甲법인의 2003사업연도(2003.1.1. ~ 12.31.)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은 850,000,000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200,000,000원
② 이자수익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수익	120,000,000원
비영업대금의 이익	30,000,000원
③ 부동산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320,000,000원
④ 고정자산처분이익	180,000,000원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2. 해당 사업연도 중 기납부세액은 55,500,000원(중간예납 30,000,000원,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5,500,000원)이다.

3. 이월결손금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물음 1)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물음 2) 위의 자료에 의하여 귀하가 甲법인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세부담 최소화 방안을 설명하시오.
단, 결산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계상되지 않았으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특례사항은 신고조정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할 것

답안작성요령

이런 문제 유형은 위에서 살펴본 20점 이상의 단독 사례형 문제의 법적근거 작성요령을 (물음 1)에 적용하여 작성하면 되고, 사례의 적용 답안작성요령을 (물음 2)에 적용하여 작성하면 된다.

2) 두 번째 유형

(물음 1)에서 이론형 문제처럼 다소 광범위한 법적근거를 물어보고 (물음 2)에서는 (물음 1)과 어느 정도 연관된 5점 정도의 단독 사례형문제가 출제되는 유형이다. 이는 2004년과 2005년 국세기본법에서 출제된 적이 있다.

(예 1)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004년 기출, 30점).

<사례 1> 과세관청의 공무원인 A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전화로 부과처분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사례 2> 과세관청의 공무원인 B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임직원들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자, 일단 사업장에서 나왔다가 다음 날 임직원이 없는 틈을 타 납세고지서를 사업장에 두고 나왔다.

(물음 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물음 2) 위 사례에서 A와 B가 행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예 2) 가산세(2005년 기출, 20점)

(물음 1) 가산세의 의의와 법적 성격, 감면사유에 대해 기술하시오.

(물음 2) 다음 사례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례 1) A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 공제 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위 거래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를 쓰시오.

(사례 2) B법인은 인정상여에 관하여 과세관청과의 소송 중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대해 B법인은 소송중임을 이유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를 쓰시오.

(물음 2) (사례 1)
1. 사례 판단
(1)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따라서 납세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책임이 면제된다.
(3) 사례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2. 결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5점짜리 사례형 답안작성요령

1. 사례 판단
   간단한 법적근거(사례와 직접 관련된 근거)를 서술한 후 사례에서 그 법적근거로 간단히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 된다. 단, 단문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2. 결어
   답을 간략히 언급하면 된다.

(3) 한 문제에 여러 법률적 판단이 혼합되어 출제되는 문제(복합사례형)

2006년 및 2013년 일부 문제의 특징은 하나의 사례에 대하여 여러 법률적 판단이 혼합되어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즉, 하나의 사례에 대하여 개별문항에서 주어진 조건을 다소 변화시키면서 각각의 경우의 조세법률관계 등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2006년, 20점)

채무자 A는 채권자 B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으면서 2004년 9월 5일자로 채권자 B에게 채권담보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2004년 9월 15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본등기가 되었고 2004년 12월 9일자로 은행에 담보 평가 등 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양도 후 채권자 B와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다. 다만, 채무자 A는 채권담보로 제공된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은 없다고 가정한다.

주주이며(지분율 60%) 대표이사인 A가 재직 중인 회사 C는 2003년 귀속 법인세를 체납하여 관할세무서장 갑은 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년 8월 6일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동 통지서의 도달일은 2004년 8월 16일, 납부기한은 2004년 8월 31일이다.

(물음 1) 과점주주 A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요건과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물음 2) 다음의 기간에 세무서장 갑이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1. 9월 5일 – 9월 14일
2. 9월 15일 – 12월 8일
3. 12월 9일 이후

모범답안

(문제 1) (물음 1) 과점주주 A의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과 납세의무의 범위
Ⅰ.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요건 : 2006년 세법을 근거로 작성한 것임
1. 주된 납세자가 비상장법인
주된 납세자가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만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한 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중 일정한 자
비상장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명예회장 · 회장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①·②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3.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주된 납세자인 비상장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이 있어야 한다.
4. 징수부족액의 발생
주된 납세자인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
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이어야 한다.

Ⅱ. 납세의무의 범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과점주주인 경우 그 부담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 징수부족액 × 지분비율
Ⅲ. 사례의 적용
1. 과점주주 A는 지분비율이 60%이므로 해당 법인의 지분비율 50% 초과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A는 해당 법인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그 부담의 한도는 징수부족액 × 60%이다.
(물음 2)
Ⅰ. 문제제기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정기일이 채권자의 담보목적의 가등기설정일보다 빠르다.
(2) 이하에서는 채권담보목적의 가등기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관할세무서장의 조세채권 확보조치
1.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 국세기본법상 규정
담보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해당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가등기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조세채권 확보조치
1) 과점주주 A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통지서 발송일(법정기일) 이후 가등기 설정을 하였으므로 과점주주 A에게 납부최고 후 미납세 가등기 설정재산을 본등기 이전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 후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체납처분을 통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
2. 9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1) 국세기본법상 규정
납세자가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 징수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서 그 납세자의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양도담보재산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세채권 확보조치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정산 전까지의 법률관계는 청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양도
담보이다.
2)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은 채권자 B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으며, 그 물적납세액을
체납한 경우 물적납세액의 체납을 사유로 하여 압류할 수 있다.
3. 12월 9일 이후
(1) 물적납세의무의 소멸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를 한 후 압류하기 전에 양도담보재산이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소멸한다.
(2) 조세채권 확보조치
1)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최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은 채권·채무의 정산 이후 채권자 B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법(2006년, 30점)

[사례 1] 지류회사 A는 판매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위치한 대리점에게 사전약정으로 일정액의 매출고를 올리면 정품 화장지를 실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사례 2] 백화점 B는 우수거래실적 고객에게는 사은품 증정하기로 미리 홍보한 후 추석때 실제로 거래 실적이 우수한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였다.

[사례 3] 회사 C는 부실기업 A의 자산을 양수하고 A의 주거래처인 B와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하여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B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회수하게 하였다.

(물음 1) 위 사례와 관련된 손금의 개념을 설명하고 유사한 손금의 항목과 비교 설명하라.

(물음 2) 위 사례의 손금항목을 결정하고 세무조정방식을 설명하라.

(물음 3) 위 사례와 관련된 판례를 1개 이상 쓰시오.

Ⅲ 계산형 문제

계산형 문제에 대한 답안작성은 세무회계처럼 그 계산과정을 보여주면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04년 소득세 문제와 2011년 법인세 문제를 들 수 있다.

(예 1) 1. 거주자 甲의 국내보유자산 양도내역

구 분	토 지	건 물	비상장주식
양 도 차 익	4,000,000	10,000,000	2,500,000
보 유 기 간	4년 6월	6년	4년
등 기(등록)여 부	등 기	미등기	미등록
양 도 일 자	2004. 3. 10	2004. 5. 5	2004. 8. 5

(물음 1) 위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甲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구하시오.

(물음 1) 거주자 甲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 토지	
① 양도차익	4,000,000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400,000
③ 양도소득금액	3,600,000
④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⑤ 양도소득과세표준	1,100,000
2. 건물	
① 양도차익	10,000,000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
③ 양도소득금액	10,000,000
④ 양도소득기본공제	-
⑤ 양도소득과세표준	10,000,000
3. 비상장주식	
① 양도차익	2,500,000
② 양도소득금액	2,500,000
③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0

(예 2)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1년 기출, 30점).

〈사례〉 A법인(발행주식총수 2,000주, 주당액면가액 10,000원)은 비상장영리내국법인이다. 2011년 5월 31일 현재 A법인의 주주는 영리내국법인인 B법인과 C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법인과 C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011년 5월 31일 현재 B법인과 C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은 각각 1,000주(각 지분비율 50%에 해당)이며, B법인의 주당 취득가액은 7,000원이고 C법인의 주당 취득가액은 12,000원이다. A법인은 설립 당시 주식을 액면발행한 이후 10년이 지난 2011년 5월 31일 현재까지 자본금의 변동과 차입금이 전혀 없다. 2011년 6월 1일 A법인은 B법인의 보유주식 중 200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면서 그 대가로 소각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인 주당 15,000원보다 낮은 주당 9,000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이 주식소각과 관련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였고, A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가 아니며, 주식소각 전 잉여금의 자본전입이나 주식소각 외의 보유주식수의 변동은 없다.

(물음 1) 2011년 6월 1일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각 법인에게 귀속되는 세무상 효과(세무조정 포함)를 설명하시오.

1) A법인
2) B법인
3) C법인

(물음 2) 2011년 7월 20일 A법인이 주식소각으로 인한 이익을 전액 자본전입하는 경우 B법인과 C법인의 세무상 효과(세무조정 포함)를 설명하시오.

위처럼 계산형 문제는 계산과정을 보여주면 된다. 다만 이런 계산형문제의 경우 사례형문제와 복합적으로 출제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계산과정을 보여주면서 사례형문제의 답안 작성요령에 맞춰 답안을 작성하면 된다.

Ⅲ 이론형 문제

1. 광의의 논제

광의의 논제가 출제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제목을 많이 나열하는 것이다. 이런 광의의 논제는 2003년 소득세 문제처럼 '납세의무자 제 규정에 대해 서술하라'라는 식으로 출제가 된다.

광의의 논제는 2003년 소득세 문제처럼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논제이지만 막상 작성하려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나는(무엇을 써야할지 갈팡질팡하는) 논제가 많으므로 평소 많은 연습과 SUB-NOTE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어째든 광의의 논제의 경우 답안 작성 방법은 서술하고자 하는 논제에 대해 번호를 붙여

가면서 하나하나씩 기억을 되살려 서술해 나가면 된다.

(예)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제 규정을 상술하시오(2003년 기출, 30점).

Ⅰ.개 요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제 규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Ⅱ.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 제 규정 (2003년 세법을 근거로 작성한 것임)
(1) 거주자와 비거주자
1) 거주자
①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자로서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②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를 요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2) 비거주자
①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②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요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본다.
(2)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
1) 1거주자로 의제되는 경우
①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1거주자로 본다.
②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봄으로 단체의 소득을 단체의 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①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가 1거주자로 의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② 단체의 소득을 각 거주자별로 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분배된 소득을 각 거주자별로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다.

(3) 공동사업의 경우
1) 원칙
①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손익분배비율로 계산된 소득
금액에 대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② 이 때 공유자와 공동사업자는 각자의 소득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만을 지므로 연대납세
의무는 없다.
2) 예외 : 공동사업합산과세
공동사업합산과세시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①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하
여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② 이 때 피상속인의 소득과 상속인의 소득은 구분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5) 분리과세소득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6)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연대납세의무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해당 자산을 직접 양도한 자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7)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거주자 중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내에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위 사례에서 보았듯이 광의의 논제에 대한 답안작성방법은 (소제목) 서술 후 2~4줄 정도에 소제목에 대해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따라서 평소 sub-note 또한 소제목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또한 서설에서는 되도록 주어진 문제의 의의 즉 개념과 취지를 서술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세법학의 주요 논제에 대해서 개념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2. 협의의 논제

최근 이론형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다. 최근 세법학 응시생이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이론형 문제가 광의의 논제보다는 협의의 논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런 협의의 논

제는 출제자가 직접 이론 부분 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서술하라는 식으로 출제된다. 따라서 출제자가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만 서술하면 되며, 문제에서 소제목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소제목을 바탕으로 서술하면 된다.

(예)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년 기출, 20점)
〈사례〉
중소규모사업자인 甲은 그의 201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받았다. 여러분이 위 甲의 세무대리인이라고 가정하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1〕 甲은 본인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있다. 「국세기본법」상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물음2) 甲은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은 가능한 한 세무조사 받기를 미루고자 한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물음3) 甲은 세무조사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甲은 세무조사 과정 중 일부 절차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甲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국세기본법」상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물음4) 甲은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일부 증빙자료의 제출 요구는 무리한 것이라고 느껴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만일 甲이 조세소송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甲의 입증책임(또는 증명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Ⅳ 견해형 문제

사실 견해형 문제라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을 바탕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는 식의 문제 유형이라 생각하면 될 듯싶다. 이런 문제는 2005년에 출제된 정치자금문제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유형은 과거에도 다소 기출된 적이 있지만 2005년 문제의 경우에는 논제 자체가 어려웠고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틀에서 서술의 범위를 잡아야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 유형은 사실 정해진 답안작성요령이 있을 수 없지만(출제교수님의 의도에 따라 답안작성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 그 대략적인 윤곽만을 잡아보면 다음과 같다.

(예) (2005년 기출, 30점)

(물음 1) 정당,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 과세할 수 있는지를 그 정치자금이 불법인 경우와 적법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물음 2) 정치인이 불법정치자금의 수수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법으로 얻은 정치자금을 몰수, 추징당한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물음 1)
Ⅰ. 문제제기
정당,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그 정치자금이 불법인 경우와 적법인 경우로 구분하여 이하
에서는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고자 한다.
Ⅱ. 과세여부
1. 적법인 경우
(1) 정당이 받은 경우
① 현행 세법상 정당은 법인 아닌 단체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된다.
②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③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적법한 경우 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
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④ 적법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정치인이 받은 경우
① 정치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② 정당의 경우처럼 적법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③ 또한 소득세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 역시 과세되지 아니한다.

2. 불법인 경우
(1) 정치인이 받은 경우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
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과세 규정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이는 불법정치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직접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과
세를 명문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2004년 말 세법을 개정하여 불법정치 자금에
대한 과세를 명문화한 것이다.
③ 따라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정당이 받은 경우
정당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정치인이 받은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
된다.
이런 문제의 유형은 주어진 물음을 그대로 반영하면 된다고 본다. 따라서 **Ⅰ. 서설(문제제기)** 물음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서술하면서 이하에서 논하고자 하는 바를 밝히면 된다. **Ⅱ. 과세여부** 1. 적법정치자금인 경우 2. 불법정치자금인 경우 주어진 문제에서 구분하여 설명하라고 했으므로 세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구분설명하면 된다.
(물음 2) : 종전 판례의 태도를 바탕으로 서술한 것임(최근 판례의 태도는 이 답안과는 다름)
Ⅰ. 문제제기
정치인이 불법으로 얻은 정치자금을 몰수, 추징당한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과세긍정
론과 과세부정론을 살펴보고 과세여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과세긍정론과 과세부정론
1. 과세긍정론
과세를 긍정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판례).
① 몰수·추징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 형벌이며,
② 몰수 등은 범죄이득을 본래의 소유자(뇌물 또는 불법정치자금 등의 제공자)에게 환원조치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귀속된 것이고,

③ 과세요건 충족 시점에서 보면 이미 소득은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몰수 또는 추징이 그 실현을 방해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과세가 가능하다.

2. 과세부정론

과세를 부정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그 과세물건은 바로 범죄에 의한 경제적 이득이며 그 경제적 이득이 몰수 또는 추징되면 과세요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과세물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다.

② 실현된 경제적 이득에 과세처분이 행해진 후에도 담세력을 표상하는 과세물건 그 자체가 상실되면 역시 그 과세처분 취소되어야 하므로 과세는 불가능하다.

Ⅲ. 결론

위 Ⅱ에서 과세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를 살펴보았다.

최근 판례의 경우 과세를 긍정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1) 조세는 경제적 부담으로서 그 부담은 경제적 이득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원칙에 일치된다.

2) 그런데, 정치자금이 몰수·추징되어 경제적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할 수 없어 담세력을 상실하였다면 과세물건 자체가 소멸된 것이고,

3) 담세력이 상실된 자에게 과세를 한다면 이는 공평원칙에 위배되므로 과세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견해형 문제 중 이런 과세여부의 타당성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Ⅰ. 서설(문제제기)

문제의 쟁점을 물음에서 찾아내어 간단히 정리하면서 이하에서 논하고자 하는 바를 밝히면 된다.

Ⅱ. 긍정론과 부정론

1. 긍정론

긍정론의 논거를 열거

2. 부정론

부정론의 논거를 열거

Ⅲ. 결론(개인적인 견해)

긍정론과 부정론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의 견해를 밝히면 된다.

Ⅴ 점수에 따른 답안지 분량

문제에 주어지는 점수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점수가 서술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점수에 따라 보통 답안지의 분량은 10점당 1페이지(띄어쓰기 포함) 또는 1페이지 반 정도가 좋고, 전체 분량은 12~ 13페이지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본다. 실전에서는 8페이지만 써도 50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14페이지 이상을 써도 과락이 나오는 경우도 많으므로 분량보다는 핵심사항을 얼마나 서술했느냐가 중요하다.

Ⅵ 글 씨

글씨는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글씨를 잘 쓰면 점수에 다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글씨를 못 쓴다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 악필이어서 떨어진 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다만, 악필이라면 소제목 서술 및 띄어쓰기를 많이 활용하여 답안이 깔끔하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Ⅶ 띄어쓰기

소제목을 서술한 후 소제목이 바뀔 때 혹은 단락이 바뀔 때는 띄어쓰기를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답안이 깔끔하게 보인다.

세법학 2부 답안작성요령

Ⅰ 사례형 문제

최근 세법학 2부는 사례형문제에 대한 비중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지방세법 정도가 사례형으로 출제되던 경향에서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까지 사례형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단순사례형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최근에는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사례형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런 사례형문제의 답안작성방법은 이미 세법학1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성하면 된다.

(예 1)

홍회계는 김세무로부터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이 350㎡인 1구의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이 아님)과 그 부수토지를 7,000만원(시가표준액은 9,000만원)에 매매로 취득을 하였다. 2003년 5월 1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최종잔금은 2003년 6월 2일에 지급하였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취득가액을 8,000만원으로 2003년 6월 3일에 취득신고 하였다. 이 경우 귀하가 세무사라는 가정하에 아래사항에 대해 홍회계에게 지방세법에 의거 세무상담을 하시오(20점).

(물음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며, 위 사례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물음 2) 취득세의 세율체계를 설명하고, 위 사례에서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물음 3) 취득세의 납기와 신고납부(위 사례와 관련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위 사례에서의 신고납부기한은?

(예 2)

학교 법인 갑은 2004.6.8. 건물을 취득하여 2004.6.24. 그 법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학교법인 갑은 위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가 2006.5.4.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이 사례에서 학교법인 갑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Ⅰ. 당초 취득시 : 2006년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1. 근거
현행 지방세법 중 취득세는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세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법인인 갑은 2004.6.8.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Ⅱ. 타인에게 임대시
1. 근거
현행 지방세법 중 취득세는 비영리사업자가 비과세를 받은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②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여부
(1) 위 사례에서 학교법인인 갑은 당초 비과세를 받은 건물을 수익사업(임대사업)에 사용했기 때문에
취득세가 과세된다.
(2) 이 경우 갑은 타인에게 임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예 3)

(1) 08년 지방세 기출문제 : 비상장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는 남편이 주식 전부를 부인에게 증여하였다. 이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어진 사례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서술하시오(20점).

(2) 09년 지방세 기출문제 : 갑은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때에 단순승인을 하였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안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때 한정승인을 하였다. 이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갑이 한정승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법적근거를 들어 논하여라(09년 기출, 20점).

(3) 13년 조세특례제한법 기출문제 :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년 기출, 20점)

〈사례〉

1. 거주자 甲은 1974년 12월 취득하여 약 36년간 보유하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년 10월 거주자 乙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쟁점토지는 甲이 자경한 농지가 아니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2. 쟁점토지는 최초 작성일자가 1991년 4월 21일로 기재된 농지원부에는 甲이 벼, 유실수 등을 자경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공부(公簿)상 지목이 '답(畓)'으로 등재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부과시 '분리과세'를 적용받은 바 있다.
3. 2008년 초부터 2011년 10월 양도시까지 약 4년간 쟁점토지 일부를 조경업자 丙이 임차하여 조경공사용 성목을 구입하여 식재하고, 임차된 부분이외의 면적에 대해서는 甲이 감나무, 고추 등을 재배하였다.
4. 甲은 2007년까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으나, 쟁점토지에서 도보로 3분거리에서 거주하면서 1974년부터 2007년까지 출퇴근시간 및 방학을 이용하여 유실수, 관상수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한다.

(물 음) 위 〈사례〉에 있어서 거주자 甲에 대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경정 · 고지가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예 4) 조문을 주는 사례형 문제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3년 기출, 25점).

〈사 례〉

1. 주식회사 A는 1999년 1월 8일 자본금 5,000만원, 본점을 서울 甲구, 목적사업을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후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으나, 1999년 7월 폐업하였는데 그 이후 사업실적이 없었다.
2. 주식회사 A는 2004년 6월 4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4년 6월 15일 주식회사 A의 기존 주주는 보유주식 전부를 주식회사 X에게 매각하고, 같은 날 상

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등기하였으며 기존 이사와 감사가 전부 사임하고 새로운 이사와 감사가 취임하였다.

3. 2004년 6월 18일 주식회사 B는 본점을 서울 乙구로 이전하고, 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임대 및 관리업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날 자본금을 50억원으로 증자하고 그에 대한 등기를 마쳤다.
4. 주식회사 B는 증자등기 당시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009년 5월 과세관청이 구(舊)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위 증자등기에 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물음 1)2009년 5월 과세관청이 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 참조 조문을 참고하여 설명하시오.

(물음 2)2013년 5월 과세관청이 위 〈사례〉의 2004년 6월 18일자 증자등기에 대하여 현행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등록면허세 중과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 참조 조문을 참고하여 설명하시오.

≪참조 조문≫

구(舊)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중략)…
1.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현행 지방세법[2010.3.31 개정] 제28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중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다음 사례와 관련 조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15년 기출)

<사례>

개인사업자 甲은 내국법인 A와 통합하기 위하여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을 A에게 현물출자 하고, A의 출자자가 되었다. 한편 甲은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1억 원으로 예정신고 하고, A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乙에게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였다. 그 이후 甲은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고 양도소득세를 3억 원으로 증액하여 수정신고 하였다. 이에 乙은 甲이 당초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액 1억 원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수정신고로 증액된 양도소득세액 2억 원에 대하여는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단, 甲과 A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고, 甲과 A의 사

업은 동일한 제조업종임)

[물음]

1.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위 사례에서 乙이 A에게 이월과세되는 양도소득세액을 甲이 당초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액으로 한정하고, 수정신고로 증액된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부인하여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관련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이하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이라 함)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Ⅲ 이론형 문제

세법학 2부는 이론형 문제가 세법학 1부에 비해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런 이론형 문제는 광의의 논제가 나오는 경우와 세부적인 논제가 나오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1. 광의의 논제가 나오는 경우

단독주제에 대해 25점에서 35점 정도의 내용을 기술하는 문제유형으로써 2004년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제도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역시 소제목을 누가 더 많이 나열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

(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35점).

2. 세부적인 논제인 경우

문제지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지에 있는 물음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하면 된다. 쓸데없는 내용을 써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예) 2002년 기출문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과 면세를 적용하는 취지를 각각 서술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이행에 있어서 차이점을 서술하시오(7점).

1. 취지
(1) 영세율
① 소비지국과세원칙의 구현
② 외화획득장려
(2) 면세
①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② 국민후생증진 및 문화관련 소비 촉진
2. 의무이행에 있어서 차이점
① 영세율 사업자는 0%의 세율이 적용될 뿐 과세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협력의무는 지지 않지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의무와 대리납부의무를 진다.

Ⅲ 견해형 문제 등

2006년도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문제에는 세법학 1부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문제 그리고 탄력세율에 대한 도입취지 및 영향을 논하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다. 이를 견해형 문제 등이라고 보기는 다소 애매한 면이 있지만 어째든 세법학 2부의 출제경향이 단순히 조문에 대해서 열거하는 이론형 문제에서 탈피하여 세법학 1부의 출제경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음 2)

소급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의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논란이 되고 있는 다툼에 대해 논하시오(10점).

지방세법

(물음 1)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이하 '탄력세율'이라고 한다) 할 수 있다. 탄력세율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이의 적용으로 인한 영향을 설명하시오(10점).

2012년 기출문제 및 합격생 모범답안

문제 1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1. 주식회사 A(사업연도는 1.1.부터 12.31.까지임)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금융기관 B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고 이 대출금을 다시 주식회사 C에게 대출하는 거래(이하 '쟁점 거래'라 함)를 하였다. 쟁점 거래는 위 3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그 법률상의 효과는 각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여기서 쟁점 거래는 가장행위나 명의를 대여한 거래는 아니라고 가정한다. 주식회사 A, 금융기관 B, 주식회사 C는 상호간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2. 주식회사 A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각 사업연도마다 쟁점 거래와 관련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 등을 계산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정기한 내 신고·납부하였다. 이러한 신고·납부 이후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쟁점 거래는 대출에 관한 감독 규정에 위반하는 부당한 거래라는 것이 밝혀져 시정하라는 통보가 내려졌다.
3. 이러한 통보 이후 주식회사 A는 2012.6.29. 금융기관 B, 주식회사 C와 다시 합의하여 위 3개년간의 회계장부를 모두 수정하고 당초부터 금융기관 B가 주식회사 C에게 직접 금전을 대출한 것으로 정정하기로 하는 등 쟁점 거래를 소급하여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물 음) 주식회사 A가 쟁점 거래에 관한 법인세에 대해 2012.6.29.자 합의해제를 근거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문제 2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甲과 乙은 세법상 거주자로서 1994.3.2. 혼인하였다. 甲은 배우자 乙소유의 토지(취득가액 3천만원)를 2009.3.2. 증여(토지의 시가는 1억원)받은 후, 2012.4.2. 주식회사 A에게 시가상당액인 6억원에 양도하였다(단, 해당 토지는 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유일한 재산임).

(물음 1) 甲과 乙이 2012.4.2.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甲과 乙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를 논하시오.

(물음 2) 甲이 2012.4.2. 현재 乙과 이혼한 상태인 경우, 甲과 乙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를 설명하시오.

(물음 3) 乙이 2012.3.2. 사망한 경우, 甲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를 설명하시오.

문제 3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1. 주식회사 A는 2009.3.2. 금융기관 B로부터 100억원을 대출받았다. 주식회사 A는 대출 전후로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인해 신용이 하락하였고 금융기관 B에게 이자대출 전후로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인해 신용이 하락하였고 금융기관 B에게 이자뿐만 아니라 100억원의 원금도 변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 주식회사 A는 2012.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다. 이 결정에 따라 금융기관 B는 주식회사 A에 대한 채권을 전부 주식회사 A의 주식을 출자전환하였다.

(물음 1) 위 사례에서 주식회사 A에 대한 과세문제를 설명하시오.

(물음 2) 금융기관 B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해 설명하시오.

(물음 3) 만일 금융기관 B가 출자전환하지 않고 ① 주식회사 A와 합의하여 대출채권의 채권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② 그 조정 이후에도 결국 대출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금융기관 B에 대한 과세문제를 각각 설명하시오.

문제 4

다음 사례를 읽고 乙, 丙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를 논하시오. (20점)

<사례>

1. 주식회사 A는 관련 업계의 불황으로 2011사업연도(사업연도는 1.1.부터 12.31.까지임)에 세무상 결손금이 20억원이 발생하였고, 그 결손금은 전액 2012사업연도로 이월되었다.
2. 甲은 회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2012.5.1. 주식회사 A에게 부동산(시가 30억원)을 증여하였다 (단, 주식회사 A의 2012 사업연도의 경우 甲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가액 외에는 다른 익금 및 손금은 없음).
3. 주식회사 A의 주주는 甲(지분율 20%), 乙(지분율 50%), 丙(지분율 30%)으로 구성되어 있다.
4. 甲, 乙, 丙은 거주자로서 상호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이다.

아래의 답안은 2012년 세무사 시험에서 세법학 1부 78점을 받은 이상진세무사의 답안이다. 세법학 1부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의 예시라 보면 되니, 평상시 모의고사 등을 통해 답안작성을 연습할 때 이 답안처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모범답안

문제 1	Ⅰ. 쟁점
	① 해당 사례는 합의해제로 인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② 이하에서는 합의해제 관련 민법상 개념과 국세기본법 법령 그리고 판례의 태도를
	근거로 경정청구 가능여부를 논하고자 한다.
	Ⅱ. 민법 규정
	1.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
	2. 합의해제
	합의해제란 계약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계약에 의해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것
	Ⅲ. 국세기본법상 관계 법령
	1.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1) 청구자 적격
	①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②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2) 청구사유(합의해제 관련)
	최초의 신고 및 결정 등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인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된 경우

	2. 통상적인 경정청구
	(1) 청구자 적격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2) 청구사유
	① 당초신고 및 수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대신고 한 경우
	② 결손금 및 환급세액을 과소신고 한 경우
	(3) 청구기한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청구
	② 결정 등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세액은 안날로 90일 이내 청구
	Ⅳ. 판례의 태도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로 효력이 발생하는 점과 납세의무가 성립 후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을 들어서 합의해제로 인한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Ⅴ. 사례 판단
	① 법인세는 기간과세세목으로서 주식회사 A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는 성립·확정됐고
	②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를 합의해제로써 소급적으로 직접 대출거래로 정정하
	였다.
	③ 따라서 주식회사 A가 3년 동안 자의적으로 법정기한 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자신이 납세의무를 성립·확정시킨 것으로써 그 후의 사건으로 합의해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고 해제권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또한 판례의 태도를 보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요건 충족 후 합의해제는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않는 점을 보아서
	⑤ 합의해제로 인한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Ⅵ.결어
	합의해제를 근거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할 수 없다. 끝

문제 2	(물음 1)
	Ⅰ. 문제제기
	해당 사례하의 물음상 양도소득세법상 혼인관계시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의 과세문제를 이하 논하고자 한다.
	Ⅱ. 관계법령
	1. 취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시 증여공제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방지
	2. 적용요건
	① 거주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일 것
	② 증여받은 자산이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일 것
	③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일로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할 것
	3. 효과
	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증여받은 자
	②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 증여한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가액
	③ 수증자의 증여세 :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 증여한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
	Ⅲ. 과세문제
	1. 甲의 과세문제
	① 甲은 양도소득세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② 양도차익은 5억 7천만원이 된다. (6억 – 3천만원)
	③ 甲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를 진다.
	2. 乙의 과세문제
	乙은 아무런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물음 2)
	Ⅰ. 쟁점
	해당 사례하의 물음은 양도소득세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규정이 양도일 현재 이혼한 상태인 경우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Ⅱ. 관계법령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이월과세 요건
	① 거주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일 것.
	② 증여받은 자산이 토지·건물·특정시설물 이용권일 것.
	③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일로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할 것
	(※ 양도당시에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시도 규정적용된다)
	Ⅲ. 사례 적용
	① 현행 양도소득세법은 이월과세적용요건상 이혼으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일 현재 이혼상태인 경우에도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도록 입법 되었다.
	② 따라서 甲과 乙이 양도일인 2012년 4월 2일(양도일) 현재 이혼 상태인 경우도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Ⅳ. 과세문제
	1. 甲의 과세문제
	① 甲은 양도소득세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② 양도차익은 5억 7천만원이 된다. (6억 – 3천만원)
	③ 甲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의무를 진다.
	2. 乙의 과세문제
	乙은 아무런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물음 3)
	Ⅰ. 쟁점
	해당 사례하의 물음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이월과세규정이 양도일 현재 사망을 원인으로 이혼상태인 경우 적용여부가 쟁점이다.
	Ⅱ. 관계법령
	1.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증여받은 자산 이월과세 요건
	① 거주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일 것.
	② 증여받은 자산이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일 것
	③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일로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할 것 (※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도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시는 불포함한다)
	Ⅲ. 사례적용
	① 현행 양도소득세법은 이월과세 적용요건상 조세회피방지 목적으로 이혼한 경우도 배우자·직계존비속간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② 그러나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시는 조세회피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배제한다.
	Ⅳ. 甲의 과세문제
	①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甲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양도차익은 5억이 된다. (6억 - 1억)
	③ 甲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를 진다. 끝
문제 3	**(물음 1)**
	Ⅰ. 문제제기
	① 해당 사례에서의 주식회사A는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법인으로써 회생계획인가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법인이다.
	② 이하에서는 법인세법상 채무출자전환 관계법령 및 과세문제를 서술하고자 한다.

	Ⅱ. 관계법령
	1. 채무의 출자전환
	(1) 원칙(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① 채무의 출자전화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② 단,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작을시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본다.
	(2) 예외
	①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불산입한다.
	② 채무자 회생·파산 관련 법률 등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등의 요건이 충족된 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에 충당 후 남은 잔액을 익금불산입한다.
	Ⅲ. 주식회사 A의 과세문제
	① 주식회사 A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계획인가를 결정받은 요건 충족 법인이다.
	② 따라서 주식회사 A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또한 요건이 충족된 법인이므로 충당 후 잔액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익금불산입 △유보)
	④ 해당 잔액은 추후 결손발생시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 유보)
	(물음 2)
	Ⅰ. 서설
	① 금융기관 B는 채무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채권자이다.
	② 이하에서는 법인세법상 자산취득가액 중 관계법령 및 사례에서의 주식취득가액을 논하고자 한다.
	Ⅱ. 관계법령(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1. 원칙
	① 일반법인의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이다.
	② 채권과의 차액은 처분손·처분익으로 본다.

	2. 예외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받은 법인의 경우 : 채권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
	② 보증채무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일시 : 주식의 시가
	③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일시 : 주식의 시가
	Ⅲ. 금융기관 B의 주식취득가액
	① 주식회사 A는 요건충족 법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 B의 주식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서 100억이다.
	② 단, 해당 대출금이 보증채무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이거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경우는 취득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물음 3)
	Ⅰ. 서설
	이하에서는 채권자가 채권가액 조정시 과세문제 및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의 대손 관련 과세문제를 서술하고자 한다.
	Ⅱ. 사례 판단
	1. 주식회사 A와 합의로 대출채권의 채권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① 금융기관 B가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계상시 대손금 인정된다.
	② 해당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채권잔액을 상계시킨다.
	③ 채무자인 주식회사 A의 입장에서 채무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채권의 조정 이후 대출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① 대출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주식회사 A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법인세법상 강제 대손사유가 충족되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단,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③ 또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인 경우는 업무무관 자신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
	이자 익금산입 세무조정이 따른다. 끝
문제 4	**Ⅰ. 문제제기 : 12년 세법을 근거로 작성한 것임**
	① 해당 사례는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어
	발생하는 주주의 과세문제가 쟁점이다.
	② 이하에서는 증여세법상 법령을 서술하고 주주 乙, 丙의 과세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Ⅱ. 관계법령(증여세법)
	1.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1) 의의
	결손법인 및 휴·폐업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이익을
	증여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상당액을 최대주주의 증여재산으로 한다.
	(2) 요건
	1) 특정법인에 해당할 것
	① 비상장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을 것
	② 비상장법인으로서 증여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중일 것
	2) 재산을 증여하는 자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을 것
	3) 특정법인에게 증여 또는 유사한 거래로 이익을 얻을 것
	① 재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② 재산·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
	③ 재산·용역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수·제공받음
	④ 채무를 면제·인수·변제하는 경우
	※ 현저한 대가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1억 이상
	(3) 증여재산가액
	① 증여재산가액 =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 $\frac{\text{최대주주의 주식수}}{\text{총발행주식수}}$
	② 단, 위 산식의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은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2. 증여의 개념(완전포괄주의)
	증여란 해당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Ⅲ. 과세문제
	1. 乙의 증여세 과세문제
	① 증여재산가액은 10억원이 된다.
	② 근거 : 20억원(한도인 결손금이 적용됨) × 50% = 10억원
	③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도 완전포괄주의인
	증여의 개념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2. 丙의 증여세 과세문제
	① 증여재산가액은 6억원이 된다.
	② 근거 : 20억원(한도인 결손금이 적용됨) × 30% = 6억원
	③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도 완전포괄주의인
	증여의 개념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1. 국세기본법

1998년부터 사례형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하여 2017년까지 사례형문제가 출제되었다(2008, 2014년은 이론형 문제가 출제됨). 물론 그 유형은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론형 문제와 사례형문제가 함께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의 경우, 모의고사를 통해 주요 논제에 대한 이론정리와 그 이론을 바탕으로 사례에 접근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판례를 중심으로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는 만큼 주요 판례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역시 국세기본법처럼 사례형문제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출제되었다(단, 2007년도에는 이론형 문제가 출제됨).

더욱이 06년도와 11년도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문제를 동시에 살펴보는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하나의 사례를 통해 각종 조세문제를 고찰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가를 물어보았다. 이런 출제경향을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 역시 국세기본법처럼 모의고사를 통해 주요 논제에 대한 이론 정리와 사례 접근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별세법 중 특히 소득세와 상관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무회계 문제를 통해 법조문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킬 필요도 있다.

3. 법인세, 소득세

사례형문제와 이론형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론형문제의 출제경향이 높았으나 점점 사례형문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세무회계를 바탕으로 한 계산형문제도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세무회계와 병행하여 법인·소득세를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역시 모의고사 등을 통해 다양한 사례형 문제를 풀어보면서 답안작성 연습과 응용력을 배양시켜야 할 것이다.

이론형문제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답안작성을 하는 것이 다소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SUB-NOTE나 요약서 등을 활용하여 논제를 정리해 나가야 된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는 세무회계가 기본이 되어야 세법학을 잘 할 수 있으므로 세무회계의 주요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보아야 하며(최근 법인세는 세무회계문제를 바탕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세무회계논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함), 세무회계에서 배운 내용을 세법학 답안작성에 요령에 맞춰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4.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비교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비교문제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비교하는 문제로 구분하여 평소 비교대상이 되는 논제에 대해 착실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는 수식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무회계를 통해 충분히 수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더불어 06년 또는 11년, 13년, 14년도처럼 판례를 바탕으로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거나 현행 법령 및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물어보는 경향도 있으므로 그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례에 접목시키는 능력도 배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조문에 대한 취지를 위주로 조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주요 판례를 숙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15년, 17년도에 사례형문제가 출제됨)도 점차 사례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모의고사 등을 통해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하여야 할 것이다.

5. 지방세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법 위주로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보다는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신고납부 등을 중점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세는 판례를 중심으로 한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법 해석능력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요 판례의 태도를 정리하여야 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논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다. 그렇다고 주요논제가 아닌 논제를 우선 공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주요논제를 먼저 공부한 후 시사성이 있거나 최근 개정 혹은 신설된 부분이 있는 조문에 대해서는 공부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기출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사성을 가진 논제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05년 문제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제도의 필요성과 그 내용을 물어보았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역시 조문의 취지를 바탕으로 조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09년, 12년, 13년, 15년, 17년 문제처럼 조문을 바탕으로 사례형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법의 해석문제를 풀 수 있는 지 여부를 물어볼 수도 있다. 따라서 방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든 조문을 볼 수는 없지만 시사성이 있거나 최근 기출된 적이 없거나 혹은 개정 및 신설된 부분이 있는 조문을 그 취지를 이해하면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의 틀을 숙지하면 비교적 쉽게 정리할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의 큰 틀을 숙지하여야 하며, 사례형 문제가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례형문제에 대한 답안작성 등을 모의고사 등을 통해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